

<2018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2018. 10. 25.

변호사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목 차

1. 종류
2. 평가원칙
3. 평가대상지역과 원고적격
4. 전략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
6.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감독
7.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8. 환경영향평가와 규제완화
9. 결론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2017. 11. 28.>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의 원칙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의 원칙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시행일 : 2018. 12. 1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새만금사건>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새만금사건>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 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입증 인정사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1) 명지대교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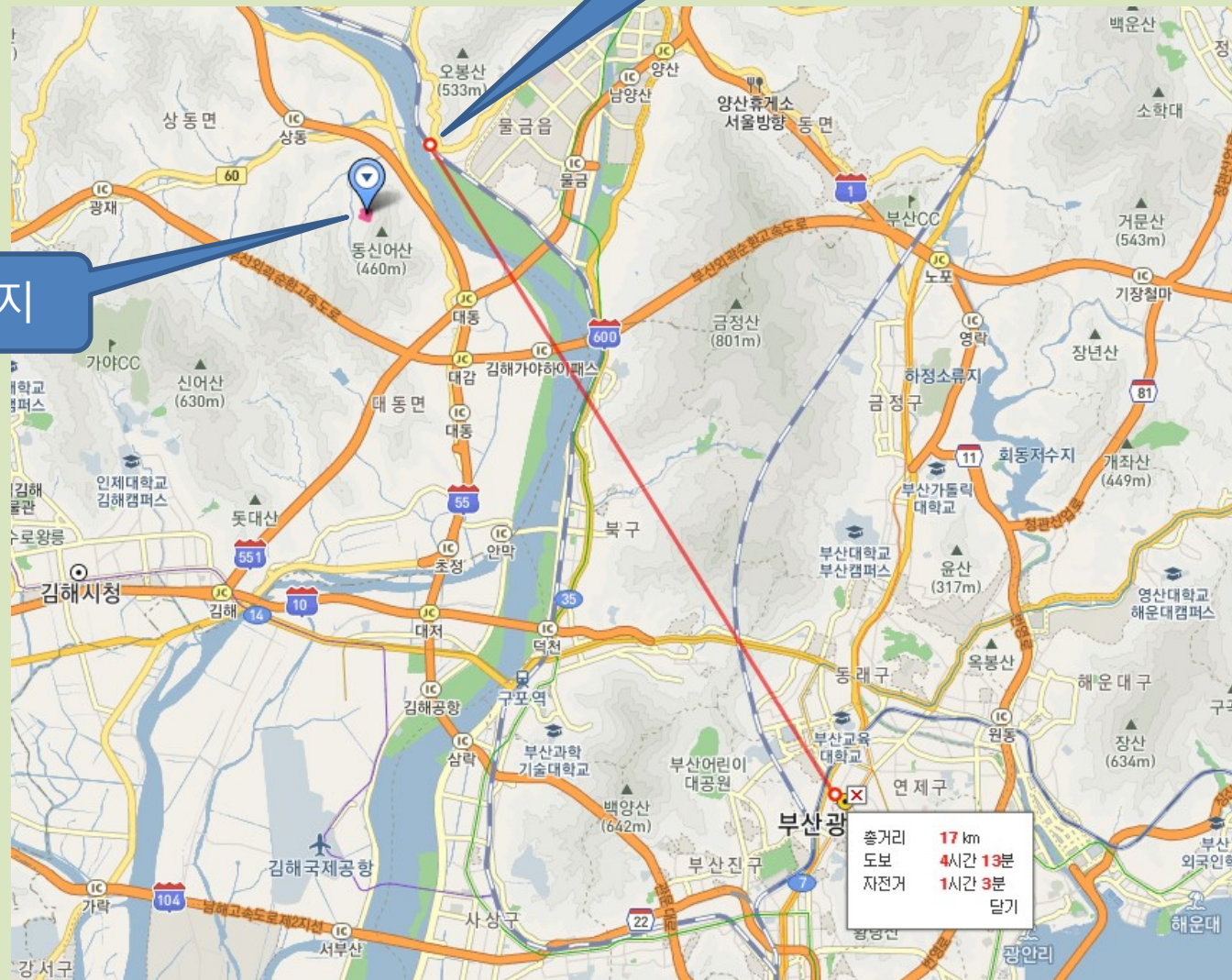
신청인들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부산녹색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 등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비록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아니나, 오래 전부터 을숙도에 자주 찾아와(특히 신청인 박○○은 최소 일주일에 한, 두차례 이상씩 을숙도를 찾아 연간 을숙도에 오는 날 수가 몇 달 간에 해당된다), 새의 관찰.연구, 새를 관찰하기 위하여 을숙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에 대한 안내, 학생들의 교육(신청인 박○○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자연보호 및 ○○시 ○○동등을 벌여 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환경이익을 향유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인바, (...중략...)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환경이익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의 가처분으로도 이를 다룰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06. 6. 19. 2006라64 공사착공금지등가 처분-대법 심리불속행기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2) 물금취수장 사건

취수장

사업부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2) 물금취수장 사건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3)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사건(검은머리물떼새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3)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사건(검은머리물떼새 사건)

<원고>

원고1. : 검은머리물떼새

원고 2.부터 원고 14.까지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환경운동가

원고 15.부터 원고 287.까지 :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거주하는 주민들

<주문>

1.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1.(검은머리물떼새)부터 14.까지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15.부터 287.까지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다만, 피고가 2007. 7.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공사계획인가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1심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3)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사건(검은머리물떼새 사건) <이유>

항 목 \ 구 분		예 측 범 위		설 정 내 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환경	기 상	사업예정지역	운영시	군산기상대 및 사업예정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
	지형·지질	사업예정지역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동·식물상(육 상)	사업예정지역 및 인접영향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예정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 (사업예정지역 4km 범위)
	동·식물상 (해 양)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 해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 확산지역)
	해양환경(해양물리)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 해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 확산지역)
	해양환경(해양수질 및 저질)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 해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 확산지역)
생활환경	토지이용	사업예정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대기질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영향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중심 반경 10km 범위 사업예정지역 중심 반경 40km 범위
	수 질	사업예정지역 주변 수계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주변 인근 수계
	토 양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영향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

(3)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사건(검은머리물떼새 사건)

<이유(편집)>

- (1) 복합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군산시 경암동 590-2 부지로부터 금강 건너편의 충남 서천군까지의 최단 거리는 2km 이하이고, 장항항과 사이의 거리는 약 4km 정도
- (2) 해양 생태계가 온배수로 인하여 침해를 받게 되면 그 주변의 해역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 15. 등이 그로 인하여 어종의 변화,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
- (4) 서천군 장항읍 어민들인 원고들의 원고적격 인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원고적격(소결)

➡ 명지대교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외에는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 대해서 원고적격 인정된 사례 없음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사건은 대상지역에 포함되지만 설명회를 안 거친 사례)

➡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 인정 가능성이 달라짐

대상지역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도 살펴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 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시행령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316호

성남북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27호(2018.3.6.)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성남북정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신흥동, 창곡동 일원
- 계획규모 : 645,812㎡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8년 3월 15일(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1층)

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

-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

- 성남북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성남시 복정동 주민센터, 성남시 신흥2동 주민센터, 송파구청 환경과, 송파구 창곡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d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 37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동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다. 사업규모 : 6,398,271㎡(1단계 : 4,476,271㎡, 2단계 : 1,922,000㎡)
-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 승인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8년 6월 26일~2018년 7월 19일(21일간,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명지동 행정복지센터,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공람장소 비치)

3.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18년 7월 3일(화) 오후 2시
- 나. 장 소 : 명지농협 2층 강당

4.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

- 주민 등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합니다.

5. 기타사항

- 주민설명회 자료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으며, 강서구청 홈페이지(www.hs-gangseo.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go.kr)에 게시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22),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 > 뉴스 > 사회 > 인천

인천만조력설명회 생략공고 가처분 신청 강화주민'패소'

2012년 04월 27일 00:00 금요일

댓글 0 | 폰트 + -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6일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 "인천해양항만청의 '주민설명회생략공고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인천항만청이 지난해 4월 15일 신문지상을 통해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내고 더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박용오 회장 등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을 반대하는 강화주민들 145명은 같은 달 인천지법에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또 먼저 진행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이후 고법과 대법에서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갈등 심화 우려

김지석 기자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입력 2018-07-01 (일) 13:25:05 / 승인 2018-07-01 (일) 13:33:49 / 최종수정 2018-07-01 (일) 15:14:34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안덕생활체육관 입구를 막는등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한국남부발전(주) 지난달 29일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제주지역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을 놓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왜 설명회를 무산시킬 수 밖에 없는가?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30% 증가)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의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시행일 : 2018.11.29.] 제26조 (환경부령 개정안 대응 필요)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 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년)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0% 이상 증가)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0% 이상 증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만 증가함에도 자연환경 훼손이 있거나 오염물질 배출을 발생, 공사 7년 중지후 재개)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제33조(변경협의를)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규모 10% 증가, 보전지역 5% 개발, 오염물질 30% 증가 또는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 감독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를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 감독

-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감독

제35조(협약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감독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 감독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감독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 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이하 이 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시행일 : 2018. 12. 13.]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감독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 감독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를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 감독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감독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시행일 : 2018. 11. 29.] 제40조의2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 감독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 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 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감시,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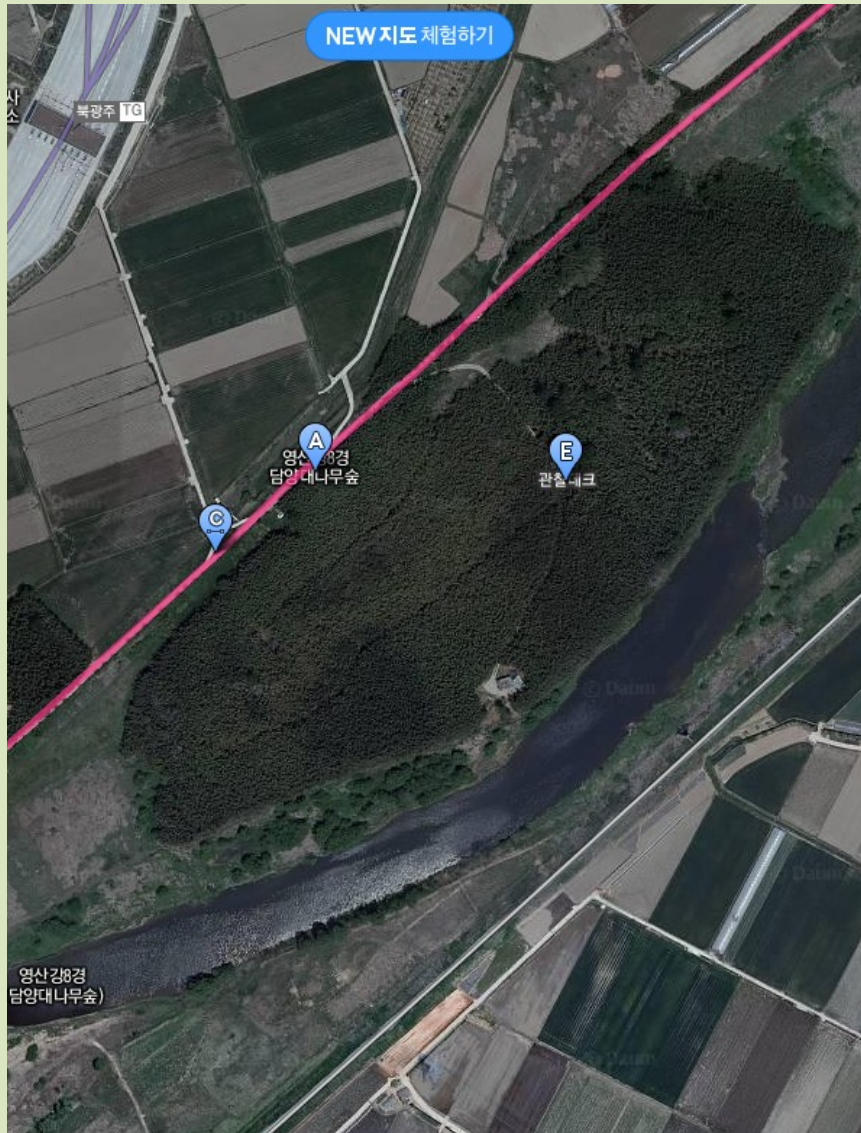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가 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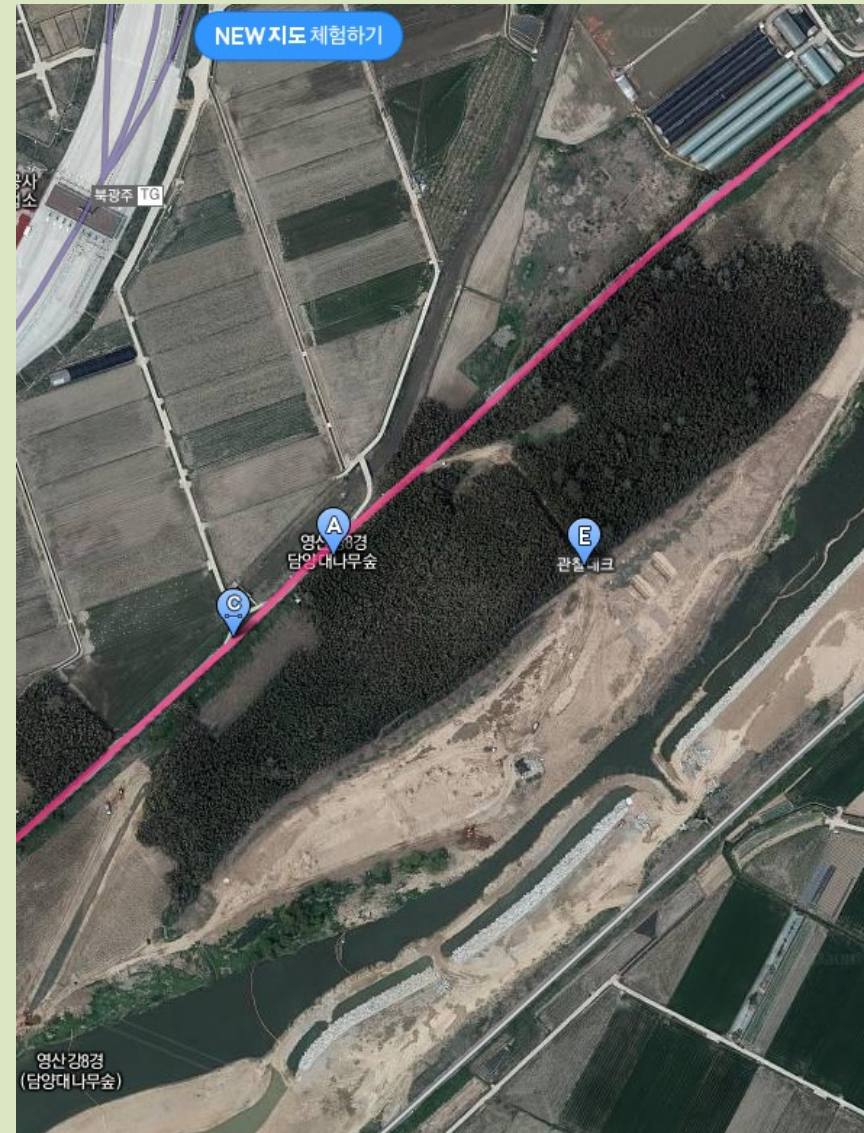
11. 28.>

[시행일 : 2018.11.29.] 제41조

4대강소송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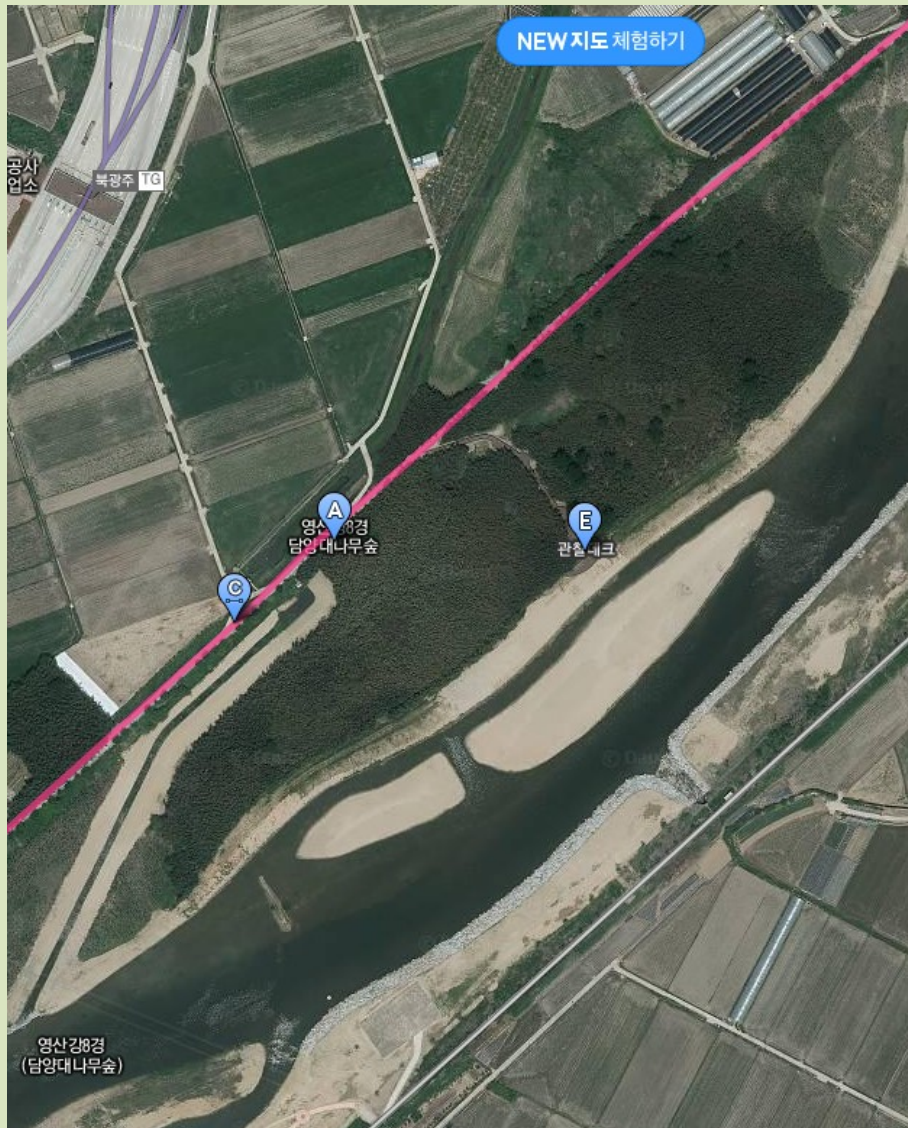


2009년(다음 위성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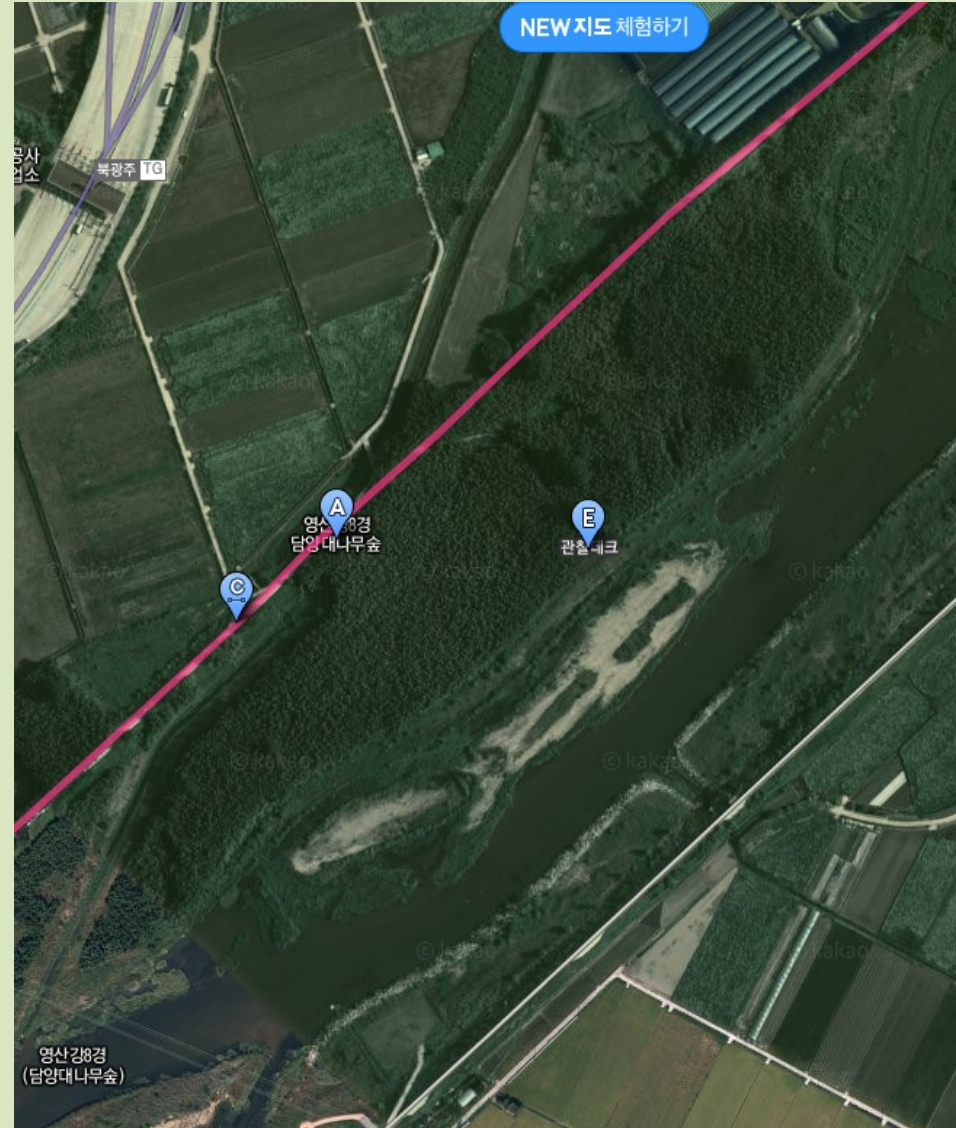


2011년(다음 위성지도)

4대강소송 사례



2012년(다음 위성지도)



2018년(다음 위성지도)

4대강소송 사례

하도 내에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0.981km²)과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관방제림(49,228m²)이 위치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산강살리기 사업(6,7,8공구) 환경영향평가서 917면(불가피한 환경영향 부분)>

4대강소송 사례

- 담양 하천습지는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 매, 삿, 맹꽁이, 천연기념물 : 황조롱이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이므로, 상·하류지역 공사로 인해 토사 퇴적 및 세굴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 생태계 변화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담양 하천습지보호지역은 자연형 하천유로가 형성되어 목본류 식생이 밀집하고 있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경관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저수호안은 유속 및 소류력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실제 시공·유지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인 호안 공법(생태블럭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 호안의 경사도는 물리적 안정성, 생태계의 횡적 연결성, 수변식물의 정착이 용이하도록 완경사 형태로 조성

<환경부 협의의견>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
허가 위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새만금 사건 등>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1)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 : **위법(무효사유)**

(2)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 : **위법(취소사유)**

(3)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 : 당해 승인 등 처분의 재량권 이탈·남용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대부분 적법으로 결론)

-> 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도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사례1)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 사건

보완된 평가서 중 사업입지 **대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외 다른 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한 바 없고, **침수피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우수 배수방안은 고양시와 협의할 계획이고, 실시 계획 및 공사시 최대한 반영하여 침수피해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

(...중략...)

그 부실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 9902 판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사례2) 새만금 사건

농림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질예측시 내부 간척지에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참작하지 않고 유역 내 인구 및 축산폐수 배출량 등을 적게 추정하여 수질예측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 **담수호 내부의 양식장은** 오염 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는** 등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발생한 **하자**를 그 후에 **보완**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생태계 및 해양환경에 대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이나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하자 보완된 것?**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사례3) 4대강소송

- ①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그 **작성 주체**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 ②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후 보완까지 환경부의 보완요청에 따라 검토·보완되었고, 그 시기 역시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전에 완료되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작성 시기**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계속)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③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질예측 결과 및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 등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어 있고,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영향거리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배수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여 만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 과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사례3 비교판례)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 침수피해 사건

칠곡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의 상승이 원고 사업부지(조경회사)의 침수 내지 조경수 등 피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중략...)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사업부지를 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변토지 성토작업 과정에서 배수시설을 제대로 완비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 2042887 판결-상고기각 확정).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시행규칙 별표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노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노락**한 경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노락**한 경우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노락**한 경우

자.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분뇨·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노락**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② 고발인은 (고발인 진술조서 221p ~ 234p)

피의자 정홍락은 매목조사와 관련된 현지조사를 전혀 행하지 않았음에도 현지조사를 행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근거는 미강생태연구원에서는 국정감사 당시부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한 매목조사 현지조사야장을 제출하지 않다가 2016. 11.에서야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미강에서 제출한 조사야장과 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고발인 측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16.11.13. 설악산오색케이블카 2번지주에 대한 현재매목조사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증해본 바 40×40방형구 7개 지점을 2~ 4인이 이틀간 조사한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나 이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면 '16. 11. 13. 고발인 국민행동 소속 활동가와 전문가 총 10명이 2번지주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데 순수 조사시간이 2시간이나 소요가 되었는바 만약에 2인이 조사를 할 때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7개지점을 이틀 안에 모두 조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며 이는 2016. 11. 2.경 진행한 현장검증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③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한봉호는, (30p~ 37p 참조)

고발인이 고발장 제출시 첨부한 증 제2호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식생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경위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는 국민 행동본부에서 사무국장 황인철이 현장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되고 있는 매목조사 부분이 부정확한 것 같아서 현장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주었으며 좋겠다는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으며,

현장조사를 10명이 실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개의 지주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실제로 2명이 조사를 하였다면 이틀내에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접 조사한 내용과 평가서의 내용이 80주 차이가 나는 것은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며,

평가서의 내용중 부실한 부분은 나무의 숫자와 위치가 전혀 맞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종이 있었다는 것은 오류이며 엄나무는 다른 현장에 있는 나무와 착각할 수 있는 수종이 아닌점 등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

② 조사기일 관련

직원들이 오전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날로 현지조사표가 작성되고 오후에 출장을 가게되면 숙박을 하고 다음날 조사를 하게 되어 출장 다음날로 현지조사표가 작성된다는 미강생태연구원 정홍락의 진술(125 p 정홍락 피신조서 참조), 국정감사시 의혹제기가 있어 미강의 출장결과보고서, 각종 영수증, 현지조사표를 제출받아 점검한 바 거짓작성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원주지방환경청 전 은혜 팀장의 진술(12p 진술조서 참조),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매목조사표의 날짜에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이 맞다는 미강생태연구원 김주순의 진술(306p 진술조서 참조) 등으로 볼 때 조사기일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기소 이유>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대안)

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대안)

7.2.1 입지비교

〈표 7.2 - 2〉

입지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도면												
내용	대안1				대안2				대안3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건축 시설	연구동	1,882.10	16.64	연구동	2,242.10	19.80	연구동	1,972.10	17.43			
		관리사무소			10.90			관리사무소		10.90	관리사무소	10.90
	교통	단지내도로	1,022.00	8.98	교통	단지내도로	699.00	6.14	교통	단지내도로	752.00	6.61
		보행자도로	214.00	1.88		보행자도로	118.00	1.04		보행자도로		
	녹지	사면녹지	822.00	7.22	녹지	사면녹지	411.00	3.61	녹지	사면녹지	561.00	4.93
		조경녹지	2,364.00	20.78		조경녹지	2,680.00	23.56		조경녹지	2,388.00	20.99
		원형보전녹지	5,063.00	44.50		원형보전녹지	5,217.00	45.85		원형보전녹지	5,694.00	50.04
	합계	11,378.00	100.00	합계	11,378.00	100.00	합계	11,378.00	100.00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KEI 검토의견)

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KEI 검토의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 정보공개청구 사건>

이 사건 각 검토의견은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의 최종의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검토의견은 의뢰 받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제1 검토의견(강릉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입지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고려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위원의 의견이 주된 내용이고, 제2 검토의견(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은 사업구간에서의 평가항목별 검토의견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각 검토위원의 성명과 더불어 그가 검토한 의견의 생태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검토의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토위원의 성명은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인하여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의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토의견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합64230 - 확정).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KEI 검토의견)

I. 총괄의견 (이영재)

- 본 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면적 954,654㎡)에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사업지구는 대부분 식생보전III등급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기존의 자연녹지를 충분히 원형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급회 원형보전지가 1%에 불과한 등 반영 정도가 미미함
- 산정부 능선축의 양호 식생지를 중심으로 공원·녹지를 추가 확보하고 인공사면 경관녹지는 최소화하는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 기타 아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I 총괄

- 가.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 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등과 함께 사업계획에 반영·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또한, 본 협의내용을 각 용지별 시설물의 공사완료 시까지 적용하여 개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나.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및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신속히 별도의 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이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다. 사업부지 및 영향권에서 착공 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까지 범정보호종 발견,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라.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야 함.
- 마. 향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정당성(KEI 검토의견)

I. 총괄의견 (김지영)

- 본 사업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 1-1번지 일원의 87,949㎡의 산지지역에 25.6MW(3.2MW 8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제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풍력발전기 부지의 입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남북방향으로 장대한 지형장애요소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동서 방향 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부 수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 및 주민을 대상으로 공지하여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총괄

- 본 사업은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1-1번지 일원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 시 아래의 세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KEI 검토의견 -양산원동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본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풍력 발전시설 기종과 동일한 국내·외 설치 사례를 파악하여 경험에 의한 운영 시 소음 영향을 예측한 후 본사업과 연계·검토
- 풍력발전시설간의 합성소음과 최악의 영향을 고려한 영향 예측
-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민원발생 예상지역인 늘발마을, 영성의집, 명전마을, 인근 농장 등에 대하여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사업시행
-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인근지역 주민과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 후 사업추진

<환경부 협의의견>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검토

I. 총괄의견 (방상원)

- 본 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면적: 2,622,825㎡)을 대상으로 증평 에듀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협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 계획지구(기정 원형보전녹지 포함)를 과도하게 개발할 경우에는 농촌체험시설, 골프장, 스키장, 숙박시설의 건설 등으로 인한 시설면적이 증가하여 물순환건전성이 훼손되고 원남저수지의 수변완충 기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하여 원남저수지의 수질 악화 및 수변녹지 경관의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원남저수지 만수위와 수변으로부터 충분한 폭의 원형보전지(수변완충구역)를 설정하고, 원남저수지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부하량이 기정 계획보다 증가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의 추가 설치를 최대한 제한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회 평가서에는 기정 및 금번의 식생훼손과 식생보전 등급의 변화에 관한 자료, 기정 대비 금번의 원형보전지 면적의 대폭 축소의 사유 또는 근거, 원형보전지의 위치와 해당 자연환경 현황 정보 등 금번 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입증할만한 중요한 정보와 자료들이 누락되거나 제시되지 않은바, 아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시하고, 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사업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KEI 검토의견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사업>

I. 총괄

-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및 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이 사업계획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자료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영향범위·정도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저감방안을 추가로 강구·시행해야 함
 - 지역주민 등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검토·조치하고, 사업 승인기관(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 해결
- 사업지역 및 영향권역에서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까지 범정보호 동·식물의 추가 발견, 환경오염 사고 등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붙임 서식 참조)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공사·운영과정에서의 사후환경관리계획을 본 사업의 착공전까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철저히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 교육계획,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환경민원 처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계획 등을 포함
- 사업시행과정에서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경우에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 예시) 토석 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 등
-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환경부 협의의견>

환경영향평가와 규제완화

법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환경영향평가와 규제완화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29.>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결론

평가서 작성 : 사업자주의

평가서 검증 : 유명무실한 환경부 협의의견

사법판단 : 사법소극주의

-> 활동가의 역할은?

결론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우리' 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다.
모두가 우리이며,
우리가 그것의 일부이다.

-앨 고어, <불편한 진실> 중에서

감사합니다